

# 예산총칙

202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11,447,343	21,343,420
일반회계	648,170,539	19,445,116
특별회계	63,276,804	1,898,304
공기업특별회계	54,449,405	1,633,482
상수도공기업	28,745,433	862,363
하수도공기업	25,703,972	771,119
기타특별회계	8,827,399	264,822
의료급여기금운영	796,130	23,88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708,642	21,259
농공지구조성사업	305,450	9,164
수질개선	2,116,937	63,508
주택사업	2,042,240	61,267
공공주택	2,858,000	85,7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5,8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